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## 식품의약품안전처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」 제정고시(안) 행정예고 알림

### 1. 관련

가. 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의3(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)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의2(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), 제5조의3(잔류허용기준의 변경 등)

나.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(행정예고)

2. 「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」 제정고시(안)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(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-596호, 2023.12.21.)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의견이 있을 경우 **2024년 1월 10일(수)까지** 구체적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우리처(유해물질기준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< 주요 내용 >

가. 잔류허용기준 설정의 정의 및 신청대상

나. 기준 설정, 변경 또는 설정면제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

3. 또한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,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 및 시·도에서는 식품 관련 소속기관 및 부서에 동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라며, 해당 민원부서 등에 동 제정고시(안)을 비치하시어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아울러, 동 제정고시(안) 행정예고를 우리 처 누리집([www.mfds.go.kr](http://www.mfds.go.kr) > 법령자료 > 입법/행정예고)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「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」 제정고시(안) 행정예고(식약처 공고 제2023-596호, 2023.12.21.) 1부

2. 검토의견서(양식) 1부. 끝.

## 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
수신자 본부(56개 전부서)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(43개 전부서), 6개 지방청장(54개 전부서), 국가기관, 지방  
자치단체, 식품 관련 협회 및 단체, 소비자단체 등

주무관

**박세종**

보건연구관

**장문익**

유해물질기준 전결 2023. 12. 21.

과장

**문귀임**

협조자

시행

유해물질기준과-4934

(2023. 12. 21.)

접수

우 28159

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안전  
처 유해물질기준과 / [www.mfds.go.kr](http://www.mfds.go.kr)

전화번호 043-719-3875

팩스번호 043-719-3850

/ [sjpark517@korea.kr](mailto:sjpark517@korea.kr)

/ 대한민국 공개

힘내라 대한민국!